

제97회 제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7월 28일 상오 10시 10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7월 28일 하오 1시 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4명
결석 강영락, 김창희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 교육장
7. 의사일정

◆보고사항

- (1) 제96회 제1, 2, 3, 4, 5차 회의록 통과
- (2)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 연동시장 상인
 - 죽동주민
- (3) 청원서 처리 전말보고
 - 호남동 역구내 신탄상 일동
- (4) 건의문 처리에 대한 회신 보고
 - 교통부장관의 유달산 관광시설 관계
- (5) 승소토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 (6) 각 의원 관외 출장 결과보고
정응표 김경인 의원

◆부의사항

- (1)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각종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 일반회계 제3회
 - 2) 수도특별회계 제2회
 - 3) 동정 특별회계 제2회
- (2) 목포시 인장 조례 개정안
- (3) 목포시 중요재산 취득안(영구차)
- (4) 목포시 중요재산 매각안(화물차)
- (5) 승소토지에 대한 변호사 보수 지급안
- (6)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7)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 토의사항

◎ 제96회 제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 찬 대

- 낭독
-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96회 제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 찬 대

- 낭독

◇정 응 표 의원

- 야화지(夜話誌) 관계 발언중 조양순 의원의 공보실장 규탄에 대한 발언이 누락된 것같으니 삽입하기 바란다.
- 그 외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96회 제3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 찬 대

- 낭독
-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제96회 제4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 찬 대

- 낭독
-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제96회 제5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 찬 대

- 낭독
-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청원서 접수상황보고

(1) 연동시장 상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서기 박 찬 대

- 낭독

◇의장 김 삼 성

-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 선언

(2) 죽동주민으로부터 제출된 것

◇서기 박 찬 대

- 낭독 도중 소개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으므로 취하 폐기됨.

◎ 청원서 처리 전말보고

호남동 신탄상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처리결과를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

◎ 건의문 처리에 대한 회신 보고

교통부장관으로부터의 유달산 관광시설 관계에 대한 건의문 회신 낭독이 서기 박찬대로부터 있었음.

◎ 승소토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

◇김 성 균 의원

- 15만평의 승소토지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를 17일간에 궁(巨)하여 실시하였는 바 주로 공설운동장 후보지 선정문제와 변호사 사례금문제를 조사, 절충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의원 관외 출장 결과보고

◇김 경 인 의원

(1) 철도국으로부터 1일 300톤의 급수요청에 접하여 이의 해결책을 강구키 위하여 상경한 바 있었는데 이번의 강우로 인하여 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2) 그외 태극호 시간단축문제, 영구차 허가 문제, 역전광장 포장 문제 등 절충을 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정 응 표 의원 보충 보고

태극호 시간 단축문제에 대하여 전남,북도 각 관계처와 절충하였다는 요지의 보고

◇의장 김 삼 성

- 해양고등학교 관계 용무로 상경한 기회에 항만준설관계로 해무청을, 우체국 신축문제로 체신청을 방문 절충하였다는 요지의 보고

◇김 상 태 의원

- 부의 안전을 상정함에 앞서 의사 일정을 변경 대 행정부 질의를 할 것을

동의

- 재청...삼청이 있었음. 칠청이 없으므로 폐기

◇의장 김 삼 성

- 부의 안건 상정 선언

※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각종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 일반 회계 제3회
- (2) 수특(水特) 제2회
- (3) 동특(洞特) 제2회

◇서기 박 찬 대

- 제안이유 설명

◇이 정 권 의원

- 시립병원 직원 생보금 변상에 있어 이의 기채액에 대한 이자 계상이 안된 이유 여하

◇장 건 식 총무과장

- 이자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현금 운행 불능중인 엠블런스 차의 기관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들었다. 그리고 서울 등지에서는 엠블런스 형의 개조차를 산견(散見)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이 차를 개조하려고 연구하여 본 일은 없는가.

◇김 상 대 의원

- 동특 추경에 있어 동사 수선비로 금반에 2만원씩 증하여 동당 7만원씩이 되는 바 이를 각동별로 균등 배부할 것인지 여하.

◇이 정 권 의원

- 시립병원, 생보금 변상관계의 이자를 본인 부담 운운한 것은 언어도단이

다. 그리고 각 동사의 적산가옥 분에 대한 불하대금의 청산방법 등은 강구하지 않고 동 직원의 위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은 모순이다.

◇정응표 의원

- 엠블런스 폐차문제에 있어서 집행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인위적인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 같으나 물적 문제는 하등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김상대 의원

- 동 직원의 수도시찰 여비 15,000환씩을 계상하였는데 의복 기타 가정 환경 등으로 서울까지 가지 못하게 될 사람도 태반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 이러한 직원에 대한 여비 지출은 여하히 할 것인가.

◇장총무과장 답변

- 김경인 의원 질문의
엠블런스의 영구차 개조문제는 차체가 너무 적은 관계로 불가능할 것이라 느껴져 연구조차 하여 본 일이 없습니다.

- 정응표 의원이 말씀하신
엠블런스의 수선비를 계상않은 이유는 세입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그리 되었으나 앞으로 병원 수입 등을 참작하여 다음 기회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대 의원의
각 동사 수선비의 균등배부 여부 문제는 각동의 수선부분의 경중에 따라 배부 하겠습니다.

- 이정권 의원의
(1) 시간외 근무 수당 계상문제는 92년도부터의 도 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2) 생보금 변상은 심계 당국의 판정은 각자 개인으로부터 변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그 본인들이 해임하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으로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상대 의원 질문의

동 직원 수도(首都) 관찰관계는 현재의 의복으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김 성 균 의원

- 만약 동 직원 중 의복에 구애를 받고 못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비만큼은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김 경 인 의원

(1) 앰블런스 차는 차기 차량 일제검사시까지 수리가 안된다면 자연 폐차될 것이 아닌가.

(2) 동직원 여비로 15,000환씩을 계상하였음은 그 실비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동 청사 수리 등 완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차제인 만큼 시기적으로 부당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정 권 의원

(1) 각동의 청사 수리비의 견적은 얼마정도 인가

(2) 각동의 적산가옥 불하대금은 얼마쯤 밀려 있으며 이의 해당 동이 몇 동이나 되는가.

◇조 양 순 의원

(1) 산정2구 동장 서리의 인사조치는 여하히 하였는가

(2) 시, 동 간의 인사교류의 반응이 없음은 어떠한 이유인가

◇김 상 대 의원 규칙발언

- 대 행정부 질의는 상정된 부의안건과 상치된 발언이 있는 것은 부당하니 주의하기 바란다.

◇김 성 균 의원

- 김경인 의원은 동 직원 1인당 15,000환씩의 여비는 실비에도 부족하다고

발언하였으나 서울서 3일간의 체재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이며 동장에게 지급할 봉급 축적액을 동 직원의 출장 여비에 충당한다는 것이 무엇이 부당하단 말인가.

◇장 총무과장 답변

- (1) 엠블런스 차는 폐차 안되도록 사전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 (2) 각 동사무소의 청사중 적산가옥은 11개소입니다.

◇의장 김 삼 성

- 본청 관계 각 회계 추경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회부 선언
- 목포시 인장 조례 개정안

◇서기 박 찬 대

- 제안 이유 설명

◇의장 김 삼 성

- 상임위원회 회부 선언

◎ 목포시 중요재산 취득안 (영구차)

◎ 목포시 중요재산 매각안(화물차)

◇서기 박 찬 대

- 제안 이유 설명

◇이 정 권 의원

- 영구차 구입예정가격이 140만원으로 만드는데 대한 경위를 설명하라.

◇의장 김 삼 성

- 상임위 회부 선언

◎ 승소토지 변호사보수 지급안

◇김 경 인 의원

- 집행부로부터 하등의 제안이 없는 안전을 여하히 심의할 것인가.

◇의장 김 삼 성

- 폐기 선언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위 특별회계 결산안

◎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교위 회계추경 예산안

◇이 사무장

- 제안이유 설명

◇이 정 권 의원

- (1) 기본재산 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일부(한푼)도 없는 이유 여하
- (2) 의무교육비 보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3) 성인교육비 보조 20만원에 6만원 밖 집행안된 이유 여하
- (4) 공민 학교비를 유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 (5) 2회 추경안을 검토컨대 예비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였음은 위험천만이 아니냐.

◇김 일 섭 의원

- 91년도 예산심의시 당 의회에서 확약하였던 사건을 교육감은 그 진퇴를 여하히 할 것인가.

◇ 이 사무장과 박교육감의 답변 생략함

◇의장 김 삼 성

- 각 상임위 회부 선언
- 산회 선언

이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7월 29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김 상 대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97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7월 31일 상오 10시 10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7월 31일 하오 5시 3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 강영락, 김창희, 김남진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 도정업자로부터

◆부의안건

-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 내무분과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의장 김 삼 성

-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보류된 안건이 남아 있으니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35분 가량 휴회하면 여하

◇김 상 태 의원

- 그것은 부당하다.

◇이 정 권 의원

- 문사위에서 무수정 통과된 안건을 내무위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내무위원회의 독선 운운의 말을 피하기 위하여 그 양해를 구하고자 일응 보류하여 두었던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문사위와 내무위는 각기 심의하던 분야가 다를 것인데 이를 합의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것은 모순된 처사라고 본다.

◇조 양 순 의원

- 35분간 휴회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재석 11명중 7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30분간 회의 중지 선언

- 속개 선언
현재)

(10시 20분)

◇박 두 순 내무위원장

- 내무위원회 종합심의보고

(1) 단기 4291년도 교육위원회 결산 승인안은 문사위에서 원안 비토로 넘어왔기 때문에 내무위에서도 심의 불능으로 폐기하였습니다.(내용생략 별지 문사위 회의록 참조)

(2)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역시 동일한 이유로 폐기하였습니다.

※ 정응표 천철수 의원 참석 재석 13명

(3) 수특추경예산안은 원안통과

- (4) 동특 추경예산안 중 수선비 및 수수료 460,000환 증을 삭감하도록 5대 1로 통과를 보았고
- (5) 인장 조례개정안 원안통과
- (6) 연동시장 상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는 행정부에 이송토록 가결
- (7) 유달중학교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는 목하 심의중
- (8) 재산취득비, 매각안은 양건 공히 원안 통과를보았으며
- (9)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역시 원안통과를 보았습니다.

◎ 청원서 접수상황보고

도정업자 대 노조분규사건

◇서기 박 찬 대

- 낭독

◇김 경 인 의원

- 본 청원서의 골자가 목포항의 암적 존재를 제거하자는 호소이니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본건 즉시 상정하여 처결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집행부에도 노동계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하여 지실(知悉)하는대로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사회과장 정 태 로

- 지난 89년 11월에 도정업자 대표 박홍근과 노조 대표 임일남 간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며 노조법 제39조에 의하면 그 유효기간이 1년간으로 규정되었으나 이 기간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례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져서 그 협약은 살아있다고 보아집니다.

◇정 응 표 의원

- 그 단체협약이 살아있다면 이 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할 성질도 못되려니

와 진정서를 제출한 자체부터가 모순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 5인정도의 전문위원을 선출하여 이 진정서 처결을 일임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었음.

◇김 경 인 의원

- 찬성발언

-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의장 김 삼 성

- 본건 전문위원으로 명남철, 김경인, 조양순, 김상대, 천철수 의원을 지명

◇김 상 태 의원

(대행정부 질의 동의)

- 7청 없으므로 폐기

◇의장 김 삼 성

부의안건 상정선언

◎ 단기4292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이 정 권 의원

- 시립병원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상한 것은 보수규정을 적용하였다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망한다.

◇김 경 인 의원

- 영구차 개조비 계상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신년도 예산을 통과할 적에는 각의원은 목포적인 사업에 중점적인 착안

을 두어 논의한 끝에 통과시켰는데 그의 집행상황을 보면 집행부에서 착안 제안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 착공한다고 보아지는 반면 의결부에서 제안한 것은 이번의 영구차 문제와 같이 차일피일 왈가왈부 지연시키고 있다함은 유감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명 남철 의원

- 병원의 침대 구입비는 삭감할 것을 주장한다.

◇조 양 순 의원

- 해안동 공동변소 부근의 진개(塵芥)철거 문제는 여하히 된 것인가.

◇김 경 인 의원

- 그곳의 진개를 철거한 현상이 그 모양이라면 목포시정에 일대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죽교2구동 시장부근 또랑 뚜껑 부설문제에 있어서 저반에 시장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후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당국과 절충한 사실이 있는지 또 예비비에서라도 그러한 공사를 착공할 의향은 없는가.

◇김 성 균 의원

- 저반 추경예산통과시 직원등의 광주 출장여비를 태극호 실비로 질출토록 하였는데 그후의 집행상황 여하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이정권 의원 질문의

병원비 특근수당 계상문제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 도의 지시로 계상하겠게 된 것인데 시의 재정형편상 부득이 보류하였던 것을 금반의 심계원 판정으로 부득이 변상케 되는 특수사정에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균 의원의

직원이 광주출장여비 지출에 있어서 1일의 경우는 태극호 실비를 지급하나 2일이상의 경우는 준급행 실비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 태 로 답변

- 명남철 의원이 말씀하신

병원 침대구입비는 6.25동란 당시 기왕에 비치하였던 침대를 분실하고 부득이 한 형편이오니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병과장 박 규 성 답변

- 영구차 문제에 대한 경위를 설명

- 내용생략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1) 내항준설 및 진개는 그 당시 완전히 처리하였습니다.

(2) 죽교2구동의 토랑뚜껑 문제는 저반 상경시 중앙청 백 도시과장을 심방하여 극력추진한 바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무망이고 명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두었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내항 준설 및 진개 철거를 완전히 끝냈다 하나 그 자체를 의심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철거를 시켰다면 다시 그곳에 안 버리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안은 세출 의회비 여비에서 40만환, 특별관공비에서 30만환, 영구차 개조비에서 40만환, 병원침대구입비에서 30만환, 계 140만환을 삭감하고 그 외 통과할 것을 동의

◇김 상 대 의원

- 영구차 개조비와 의회비 여비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이 정 권 의원

- 집행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었음.

◇정 응 표 의원

- 진개를 철거하는 것은 사회과장 소관이라고 보아진다. 이의 답변도 한계를 가려서 하여주기 바라며 이의원의 개의에 찬성하는 바이다.

◇김 경 인 의원

- 동의 철회

◇이 정 권 의원

- 동의 표결 결과 만장일치 가결

◇의장 김 삼 성

- 오전 회의 중지 선언

- 속개 선언

(하오 3시 15분 현재)

◎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수특 추경예산안

◇김 상 대 의원

- 원안 통과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2년도 제2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김성 균 의원

- 내무위 수정안인 수선비 및 수수료 460,000환 증을 삭감, 그 외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었음.

◇김 경 인 의원

- 본건 보류 개의

- 재청...사청이 있어 폐기

◇김 성 균 의원

- 동의 표결결과

- 재석 13명 중 가 7표 가결

◎ 목포시 인장 조례개정안

◎ 목포시 중요재산 취득안 (영구차)

◎ 목포시 중요재산 매각안(화물차)

◇김 경 인 의원

- 3건 공히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교육위원회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이 전문위원회에서 비토되었다 하여 의제가 안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므로 일응 본회의에 상정 토론을 전개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어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결산승인안

◎ 단기 4292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김 경 인 의원

-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심심토의한 끝에 비토하였다 보

아지는 것이나, 예산,결산안을 비토할 적에는 그 이유를 일일이 지적하여 내놓아야 할 것이며 문사위에서 제시한 비토이유만으로는 전체 예결산안을 비토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아진다.

문사위가 지적한 이유는 사직당국과 심계원 같은 기관에 조치할 문제라고 보아질 적에, 집행자의 처사는 밋다 할지라도 비토 원인이 희박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니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이의 심의에 임하여야 되리라고 보여진다.

◇이 정 권 의원

- 결산안을 비토할 적에는 이에 수반한 어떠한 결정적인 대안 즉 교육감이 물러가라는 것과 같은 단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김 상 대 의원

- 의회에서 교육감을 물러가라, 말아라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지며 그 이유를 들어 비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이정권 의원의 발언과 같이 결산은 어디까지나 승인안인 것이다. 범칙행위가 있다면 사직당국이나 심계원의 판정을 받을 부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육감의 불신임 건의를 한다든지, 도당국에 인사조치를 의뢰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명한 술책일 것이니 우리 의회에서는 숙고하여 처결할 문제일 것이다.

여러분이 호응하신다면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줄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 재청이 있었음.

◇이 정 권 의원

- 문사위의 태도는 확고부동하다. 승인할 수 없다.

◇명 남 철 의원

- 본건이 본회의에 재상정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며 달성국민학

교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의회를 농락한 비양심적인 교육감은 자진 물러가야 할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본의원의 동의를 철회하고 회의규칙으로 보아서는 경(更)히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의 모범이 앞선다고 보아질 적에 5인 정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 심의와 가결짓는 권한을 부여하여 차기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동의를 고치고자 한다.

◇이 정 권 의원

- 법에 명문이 있는 이상 그러한 조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 본건 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개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었음.

◇의장 김 삼 성

- 10분간 비공개회의로 들어갈 것을 선언 (하오 5시 현재)

- 속개 선언 (하오 5시 10분 현재)

◇이 정 권 의원

- 개의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의장 김 삼 성

- 양건 공히 상임위원회 회부선언

◇김 상 태 의원

- 대 행정부 질의 동의하다.

- 재청...6청 (폐기)

◇의장 김 삼 성

- 하동현 시장의 임기도 박두하였으니 이임식의 절차같은 것으로 결정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명 남 철 의원

-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었음.

◇김 경 인 의원

- 용당도선장 운영시간을 하오 6시 30분부터 7시까지의 사이에 증회하여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삼청이 있었음.

◇명 남 철 의원

- 선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기술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부 통과할 것을 참가

- 동의집 수락

◇이 정 권 의원

- 그렇게 되면 예산상 무리가 될 것이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참가

- 동의집 수락

◇김 경 인 의원

-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조 양 순 의원

- 각동을 통하여 유엔협회비 징수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의 법적 근거와 징수방법 등을 설명하여주기 바란다.

◇시정 주무 박 찬 대

- 답변이 있었음

※ 내용생략

◇의장 김 삼 성

- 폐회를 선언

(하오 5시 35분 현재)

이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8월 1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김 상 대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목포시의회 문사분과위원회 회의록

1. 시 일 : 4292년 7월 29일 자(自)10시 40분~지(至)15시 40분 (5시간)

1. 참석 : 의원 김상대 의원, 조양순 의원, 김성균 의원, 임석희 의원, 명남철 의원

1. 집행부측 출석자 : 사회과장 김철수 배문봉
교육감, 사무장 외 교육청 직원 3명

◆심의사항

1.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김성균 의원

- 심의 결과 불충분한 점도 있는 듯한 감도 있으나 일괄 통과하여 주기를 동의한다.

◇임석희 의원

- 재청

◇명남철 의원

- 개의, 시립병원의 침대구입과 직원이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

◇조양순 의원

- 재개의, 영구차 구입 1,400,000환은 부당하니 제외하자.
- 개의 및 재개의 찬성자 없어 부결되고

◇김상대 의원

- 일괄 통과동의에 찬성함으로

◇위원장

- 3대 2로 통과를 선언하다.

1. 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4291년도)

◇임 석 희 의원

- 심의 결과 미비점이 허다함으로 부결할 것을 동의한다.

◇명 남 철 의원

- 임의원의 부결동의에 찬성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결산서면을 심의컨대 3천여만원환을 징수하기 위하여 9백여만원환의 경비를 소모하였음은 무능한 예산 집행이기로 부결동의에 재청한 바이다.

◇조 양 순 의원

- 임의원 동의에 삼청하면서 찬성이유를 들겠다. 심의컨대 전액에 가까운 국가 보조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이유와 또한 결산액중에는 예산액을 초과한 항목이 있으며 교사(校舍) 보험부담금을 90, 91년도 양년에 걸쳐 미지불중에 있는 것과 부담액에 대한 결정액의 산출 기초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확답을 못한데 있다. 즉 부결찬성이유 3개 항목을 들겠다.

※ 김상대 의원, 김성균 의원 양 의원은 기권

◇김 상 대 위원장

- 3대 2로 동의를 통과함을 선언하다.
- 폐회선언 이상(以上)

목포시의회 문사분과위원회 회의록

1. 시일 : 단기 4292년 7월 30일 자 10시 20분 ~ 지 12시 20분 (2시간)
2. 참석의원 : 김상대 의원, 김성균 의원, 임석희 의원, 명남철 의원, 조양순 의원
3. 집행부 출석자 : 박교육감, 이 사무장 외 3명 중앙교 교장

◆심의사항

- 1.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명 남 철 의원

- 원안반환 동의 이유

신영비를 수리비에 충당케 한 것은 부당하며 임대료에 있어 년도중에 구입된 것이 안이온대 년도중에 추경으로 계상되었음은 이해할 수 가 없으며 만일 계상을 할려거든 포탈된 전 임대대지료(垔地料)를 하라.

◇김 위원장

- 원안반환 동의에 찬성 여하

◇조 의원

- 재청

◇김 성 균 의원

- 삼청

◇김 상 대 의원

- 사청

◇임 석 희 의원

- 기권

◇김 위원장

- 4대 1로 원안반환 동의 가결 선언하다.